

후쿠시마·주변 8개현 수산가공품 수입 무방비

민주당 주철현 의원 국감 자료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가공품 관리 안돼 대책 시급
8월 어묵 등 3.5톤 수입해 배포
생산지역 표기 없이 유통 문제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라 후쿠시마현과 주변 등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수산가공품의 수입에 대한 관리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수산물로 2차 가공한 어묵 등 수산가공품은 5차례에 걸쳐 3500kg이 국내에 수입됐다. 현재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에 대한 금지가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이들 지역의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품은 국내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원산지 표시마저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본산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가공품은 어묵, 젓갈, 건포류, 통조림 같은 식품인데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가의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 이후에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수산가공품이 5차례에 걸쳐 3500kg가량 수입됐다.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7개현에서 생산해 수입한 수산가공품까지 합치면 그 양은 훨씬 늘어날 것이며, 이들 지역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수입된 걸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과 주변 등 8개현의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의 나머지 지역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해당 8개현은 후쿠시마와 주변의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18면 /연합뉴스

서는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는데 전수검사가 아니라 무작위 표본만을 추출해서 검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현 등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일부 방사능 표본검사만 실시한 채 계속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산가공품은 일본산이라고만 표기

되고, 생산지역은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가공품의 수입금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전수검사라도 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장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표본방식이 아니라 제한 없는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은 현재까지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발주자·원청 모두 처벌

국토부, 처벌 수준 강화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업체(제하도급사)도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

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가맹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

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높인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무등록·무자격 시공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한다. /연합뉴스

- 총장로 공실 상가 전단지 '난장판' > 6면
-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회의 > 11면
- 금 50개·3위 목표...한국 선수단 항저우로 >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올 추석에도 먹거리·볼거리 가득한 광산구 전통시장에서 장만하세요

- 송정5일시장(3·8일)**
광산로 30번길 65
- 비아5일시장(1·6일)**
비아중앙로 26-1
- 월곡시장**
사암로 300
- 1913송정역시장**
송정로8번길 13
- 송정매일시장**
송정로29번길 64
- 우산매일시장**
우산동 1577-2~6 외

진속가능광산